

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번	안 호	620
--------	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 . 3. 21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사유

-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행정규제 부분을 개선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)납부한임대료및사용료는 “반환하지 아니한다”를삭제(안 제13조)
- 나)지도감독회수를 연“2회”에서“1회”로조정(안 제22조)

3.참고사항

-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

4.본 문

- 붙임과 같음

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3조 본문중“반환하지 아니한다,다만”및“임대료또는사용료의”를삭제한다.,

제22조 제1항중 “매년2회”를“매년1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조문 대비표	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임대료및사용료반환)남부한임대료 및 사용료는 <u>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</u> 다음각호의1에 해당될때에는 임대료 또는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 1-3(생략)	제13조(임대료및사용료반환)----- ----- (삭 제) ----- (삭제) (삭 제)----- ---- 1-3(현행과 같음)
제22조(지도감독) ①읍·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<u>2회</u>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(생략)	제22조(지도감독) ①----- ----- 1회----- ----- ---- ②(현행과 같음)